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TTC

I. 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についての基本指針	108
II. 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についての運用細則	110
III. 工業所有權等の實施許諾に係る聲明書	113
IV. 社團法人情報通信技術委員會における著作権の取扱いについて	115

I. 公업소유권 취급에 대한 기본지침	108
II. 公업소유권 취급에 대한 운용세칙	110
III. 公업소유권 실시허락에 관한 성명서	113
IV. 정보통신기술위원회(TTC)의 저작권 취급	115

## 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についての基本指針

理事会  
制定：平成元年5月18日  
最近改正：平成18年3月7日

社団法人 情報通信技術委員会(以下「TTC」という。)において制定するTTC標準及びTTC仕様書(以下あわせて「TTC標準等」という。)は、会員をはじめ電気通信に関わる多くの人人に準拠すべき標準を提供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公正、透明な手続により作成されるものである。

本基本指針は、TTC標準等の全部または一部を実施する上で必須の工業所有權等(工業所有權等とは特許權、實用新案權及び意匠權をいい、出願中のものを含む。以下同じ。)の取扱いを定めるものである。

### 1. 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

TTCは、TTC標準等の原案内容の全部又は一部を実施するうえで必須の工業所有權等の所有者(以下「權利所有者」という。)が次の(1)又は(2)を選択するときは、當該TTC標準等の原案を制定、改定の対象とする。

- (1) 當該權利所有者は、當該TTC標準等を実施する者に對し、當該TTC標準等を実施する範圍において、無償で當該工業所有權等の實施を許諾する。
- (2) 當該權利所有者は、當該TTC標準等を実施する者に對し、當該TTC標準等を実施する範圍において、適切な條件の下に、非差別的に當該工業所有權等の實施を許諾する。

ただし、當該TTC標準等の内容の全部又は一部を実施するうえで必須の工業所有權等を所有し當該TTC標準等を実施する他の者が、當該權利所有者の選擇する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とは對等でない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を當該權利所有者に對して主張した場合は、當該權利所有者は當該他の者を上記の(1)又は(2)の対象から除外することができる。

### 2. 責任範圍

TTCは、TTC標準等の内容の全部又は一部を実施するうえで工業所有權等が必須であるか否かについて確認する責任はなく、また工業所有權等に係る一切の紛争に對してその責任を有しない。

### 3. 運用細則

本基本指針の細目事項については「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についての運用細則」としてIPR委員会で定める。

## 公業소유권 취급에 대한 기본지침

이사회  
제정: 1989년 5월 18일  
최근 개정: 2006년 3월 7일

사단법인 정보통신기술위원회(이하 'TTC' 라 한다)에서 제정한 TTC 표준 및 TTC 사양서(이하 통틀어 'TTC 표준등' 이라 한다)는 회원을 비롯한 전기통신에 관한 다수인에게 준거할 표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본 지침은 TTC 표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데에 필수 IPRs (IPRs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말하며, 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취급을 정하는 것이다.

### 1. IPR의 취급

TTC는 TTC 표준등의 원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데에 필수 IPRs 소유자(이하 '권리자' 라 한다)가 다음의 (1) 또는 (2)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TTC 표준등의 원안을 제정·개정 대상으로 한다.

- (1) 당해 권리자는 당해 TTC 표준등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TTC 표준등을 실시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당해 IPR 실시를 허락한다.
- (2) 당해 권리자는 당해 TTC 표준등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TTC 표준등을 실시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당해 IPR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

단, 당해 TTC 표준 등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수 IPR 등을 소유한 당해 TTC 표준 등을 실시하는 기타의 자가 당해 권리자가 선택하는 공업소유권 등의 취급과 대등하지 않은 IPR 취급을 당해 권리자에게 주장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자는 당해 기타의 자를 상기 (1) 또는 (2)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책임범위

TTC는 TTC 표준 등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함에 있어서 IPR이 필수인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없다. 또한 IPR에 관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운용세칙

본 기본지침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IPR 등의 취급에 대한 운용세칙' 으로 IPR 위원회에서 정한다.

附則：(平成元年5月18日理事會制定)

附則：(平成13年10月24日理事會改正)

附則：(平成14年3月28日理事會改正)  
この改正は平成14年5月27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15年3月3日理事會改正)  
この改正は平成15年4月24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18年3月7日理事會改正)  
この改正は平成18年3月23日から施行する

부칙：1989년 5월 18일 이사회 제정

부칙：2001년 10월 24일 이사회 개정

부칙：2002년 3월 28일 이사회 개정  
이 개정은 200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년 3월 3일 이사회 개정  
이 개정은 200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3월 7일 이사회 개정

## 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についての運用細則

IPR 委員會  
制 定：平成14年5月27日  
最近改正：平成19年10月15日

本運用細則は、「社団法人情報通信技術委員會 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についての基本指針」(以下「基本指針」という。)の運用に当たっての細則を規定したものである。

### 1. 會員所有の工業所有權等の調査及び聲明書の提出要請

#### 1.1 TTC 標準等の作成過程において

TTC 標準又はTTC 仕様書(以下あわせて「TTC標準等」という。)の原案を作成する専門委員會において、専門委員長は、当該専門委員會参加委員に寫し、当該TTC標準等の原案に係る必須の工業所有權等の所有の有無を調査し、該当するものがあれば、「工業所有權等の實施許諾に係る聲明書」(以下「聲明書」といい、その様式を付録に定める。)をできる限り速やかに理事長宛に提出するよう要請する。

#### 1.2 TTC 標準の新規制定または改定(以下「制定/改定」という。)の最終過程において

事務局は、標準化會議前にTTC 標準の原案を周知する際に、全ての會員に寫し、当該TTC標準の原案に係る必須の工業所有權等の所有の有無を調査し、該当するものがあれば、聲明書を当該周知後3週間以内に理事長宛に提出するよう要請する。

#### 1.3 TTC 仕様書の制定/改定を直近の標準化會議へ報告する過程において

事務局は、TTC 仕様書の制定/改定の後の直近に行われる標準化會議への報告において、全ての會員に寫し、当該TTC 仕様書に係る必須の工業所有權等の所有の有無を調査し、該当するものがあれば、聲明書を当該報告後3週間以内に理事長宛に提出するよう要請する。

### 2. 會員から聲明書が提出された場合の取扱い

#### 2.1 TTC 標準等の作成過程において提出された場合

- 事務局は提出された聲明書の寫しを所管の専門委員會に提示する。
- 当該専門委員會は当該聲明書の内容を審議し、その内容が基本指針第1項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は、当該TTC 標準等の原案を修正/廢案とする。

#### 2.2 TTC 標準の制定/改定の最終過程において提出された場合

- 事務局は提出された聲明書の寫しを所管の専門委員會に提示する。
- 当該専門委員會は当該聲明書の内容を審議し、
  - 当該聲明書の内容が基本指針第1項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当該TTC 標準の原案を標準化會議に付議する。

## 公業所有權 취급에 대한 운용세칙

IPR 위원회  
제정: 2002년 5월 27일  
최근개정: 2007년 10월 15일

본 운영세칙은 '사단법인 정보통신기술위원회 IPR 취급 기본지침' (이하 '기본지침' 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의 세칙을 규정한다.

### 1. 회원 소유 공업소유권등의 조사 및 성명서 제출 요청

#### 1.1 TTC표준등의 작성과정 중

TTC표준안 또는 TTC사양서안(이하 'TTC표준안등' 이라 한다)을 작성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장은 당해 전문위원회 참가위원에 대하여 당해 TTC표준안등에 관한 필수 IPR 소유 유무를 조사하고,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당해 '공업소유권등의 실시 허락에 관한 성명서' (이하 '성명서' 라고 하고, 그 양식을 부록으로 정한다)를 가급적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1.2 TTC표준의 신규제정 또는 개정(이하 '제정/개정' 이라 한다)의 최종과정

사무국은 표준화 회의전에 TTC 표준안을 주지할 때, 모든 회원에게 당해 TTC 표준안에 관련된 필수 IPR의 소유 유무를 조사하고, 해당하는 것이 있을 경우 당해 주지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1.3 TTC사양서 제정/개정후

사무국은 TTC사양서의 제정/개정 직후 열리는 표준화회의의 보고서, 모든 회원에게 당해 TTC사양서에 관한 필수 IPR 소유 유무를 조사하고,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성명서를 당해 보고후 3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2. 회원으로부터 성명서가 제출된 경우의 취급

#### 2.1 TTC 표준등의 작성과정 중 제출된 경우

- 사무국은 제출된 성명서 사본을 소관 전문위원회에 제시한다.
- 당해 전문위원회는 해당 성명서 내용을 심의하고, 그 내용이 기본지침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TTC 표준안을 수정/폐지한다.

#### 2.2 TTC표준의 제정/개정 최종 절차시 제출된 경우

- 사무국은 제출된 성명서 사본을 소관 전문위원회에 제시한다.
- 해당 전문위원회는 성명서 내용을 심의하고,
  - 해당 성명서 내용이 기본지침 제1항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TTC 표준안을 표준화회의에 부의한다.

b) 當該當明書の内容が基本指針第1 項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は、當該TTC標準の原案を廢案とし、標準化會議に報告する。

### 2.3 TTC 仕様書の制定/改定を直近の標準化會議へ報告する過程において提出された場合

- ① 事務局は提出された聲明書の寫しを所管の専門委員會に提示する。
- ② 當該専門委員會は當該當明書の内容を審議し、その内容が基本指針の第1 項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は、當該TTC仕様書を廢止し、標準化會議に報告する。

## 3. 會員から聲明書が提出されなかった場合の取扱い

### 3.1 免責

會員が聲明書を提出しなかった場合において生ずる一切の問題については、基本指針第2 項の規定により、TTC は責任を負わないものとする。

### 3.2 TTC標準等の制定/改定の後に會員所有の工業所有權等の存在が判明した場合

- ① 事務局は、會員または非會員の申し出によりTTC 標準等の制定/改定の後に當該TTC標準等に係る會員所有の工業所有權等の存在が判明した場合、當該當員に聲明書の提出を求める。
- ② 事務局は提出された聲明書の寫しを所管の専門委員會に提示する。
- ③ 當該専門委員會は當該當明書の内容を審議し、その内容が基本指針第1 項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は、當該TTC 標準等の修正または廢止等について審議することができる。

## 4. 會員が提出した聲明書の内容に變更が生じた場合の取扱い

### 4.1 條件に變更が生じた場合

會員は聲明書第3項に記載した條件を變更する場合は、理事長宛に聲明書を再提出する。ただし、聲明書第3 項における條件の、(1)から(2)または(3)、もしくは(2)から(3)への變更は認められない。

### 4.2 權利所有者に變更が生じる場合

- ① 聲明書に記載した權利所有者に變更が生じる場合は、變更前の權利所有者はできる限り速やかに理事長宛に通知する。
- ② 事務局は變更後の權利所有者に聲明書の提出を要請する。

### 4.3 工業所有權等が不成立又は消滅した場合

聲明書に記載した工業所有權等が不成立又は消滅した場合は、當該當明書の提出者は、その旨を理事長宛に通知する。

## 5. 非會員が所有する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

b) 해당 성명서 내용이 기본지침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TTC 표준 원안을 폐지하고 표준화회의에 보고한다.

### 2.3 TTC사양서 제정/개정을 직근 표준화회의에 보고하는 과정 중 제출된 경우

- ① 사무국은 제출된 선언서 사본을 소관 전문위원회에 제시한다.
- ② 해당 전문위원회는 성명서 내용을 심의하고, 그 내용이 기본지침 제1항 취급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TTC 사양서를 폐지하고 표준화회의에 보고한다.

## 3. 회원이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

### 3.1 면책

회원이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기본지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TTC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2 TTC 표준등의 제정/개정 후에 회원 소유 IPR 존재를 확인한 경우

- ① 사무국은 회원 또는 비회원의 통지로 TTC 표준등의 제정/개정 후에 해당 TTC 표준등에 관한 회원 소유 IPR 존재가 판명된 경우 당해 회원에게 성명서 제출을 요청한다.
- ② 사무국은 제출된 성명서 사본을 소관 전문위원회에 제시한다.
- ③ 당해 전문위원회는 당해 성명서 내용이 기본지침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TTC 표준등의 수정 또는 폐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 4. 회원이 성명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취급

### 4.1 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

회원은 성명서 제3조에 기재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성명서를 다시 제출한다. 다만, 성명서 제3항의 조건 중 (1)에서 (2) 또는 (3)으로, 혹은 (2)에서 (3)으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 4.2 권리소유자에 변경이 생긴 경우

- ① 성명서에 기재한 권리자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전 권리자는 가능한 신속히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 ② 사무국은 변경후 권리자에게 성명서 제출을 요청한다.

### 4.3 IPR이 불성립 또는 소멸한 경우

성명서에 기재한 IPR이 불성립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성명서 제출자는 그 뜻을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 5. 비회원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 등의 취급

### 5.1 TTC 標準等の制定/改定の前に存在が判明した場合

所管の専門委員会は、TTC 標準等の原案の作成に当たって TTC 非会員が所有する工業所有権等の有無を可能な範囲で調査し、非会員所有の工業所有権等の存在が判明した場合は以下の對處を実施する。

- ① 事務局は、権利所有者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非会員に寫し、基本指針を提示したうえで、聲明書の提出を要請する。
- ② 事務局は、提出された聲明書の寫しを當該専門委員会に提示する。
- ③ 當該専門委員会は當該當明書の内容を審議し、その内容が基本指針第1 項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は、當該TTC 標準等の原案を發案とする。

### 5.2 TTC 標準等の制定/改定の後に存在が判明した場合

所管の専門委員会は、會員又は非會員の申出により、非會員が所有する工業所有権等に係る TTC 標準等の修正または廢止等について審議することができる。

### 5.3 非會員から聲明書が提出されなかった場合の取扱い

上記第3.1 項に準ずるものとする。

### 5.4 聲明書の内容に変更が生じた場合の取扱い

上記第4 項に準ずるものとする。

## 6. 聲明書の保管と公開

事務局は提出された聲明書を保管し、その内容を公開する。

## 7. 標準等への注記

TTCは「TTCが公開している聲明書一覽を参照するように」との注記を全てのTTC標準等に記載する。

附則：(平成14年5月27日IPR委員会 制定)

附則：(平成14年12月10日IPR委員会 改正)

附則：(平成15年4月17日IPR委員会 改正)

附則：(平成18年2月14日IPR委員会 改正)

この改正は平成18 年3 月23 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19年 10月 15日 IPR委員会 改正)

この改正は平成 19年 12月 1日から施行する。

### 5.1 TTC표준등의 제정/개정전에 소유가 확인된 경우

소관 전문위원회는 TTC 표준등의 원안 작성시, TTC 비회원이 소유하는 IPR 유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하고, 비회원소유의 IPR 존재가 판명된 경우에는 이하의 대처를 실시한다.

- ① 사무국은 당해 비회원에게 대하여 기본지침 및 운용세칙을 제시한 후 성명서 제출을 요청한다.
- ② 사무국은 제출된 성명서 사본을 소관 전문위원회에 제시한다.
- ③ 해당 전문위원회는 당해 성명서 내용을 심의하고, 그 내용이 기본지침 제1항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TTC표준등의 원안을 수정 또는 폐지한다.

### 5.2 TTC 표준등의 제정/개정 후에 소유가 확인된 경우

소관 전문위원회는 회원 또는 비회원의 통지로, 비회원이 소유하는 IPR이 관련된 TTC 표준등의 수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5.3 비회원이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

위 제3.1항에 따른다.

### 5.4 성명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취급

위 제4항에 따른다.

## 6. 성명서 보관과 공개

사무국은 제출된 성명서를 보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 7. TTC 표준등에 기재

TTC는 'TTC가 공개하는 성명서 일람을 참조하도록' 하는 기재를 모든 TTC 표준 등에 기재한다.

부칙：2002년 5월 27일 IPR 위원회 제정

부칙：2002년 12월 10일 IPR 위원회 개정

부칙：2003년 4월 17일 IPR 위원회 개정

부칙：2006년 2월 14일 IPR 위원회 개정

이 개정은 200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0월 15일 IPR 위원회 개정

이 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工業所有權等の實施許諾に係る聲明書

社団法人 情報通信技術委員會  
理事長 \_\_\_\_\_ 殿

提出年月日：平成 年 月 日  
提出者：(會社,所屬,氏名,印)

貴會の標準化案件に係る工業所有權等(工業所有權等とは特許權,實用新案權及び意匠權をいい,出願中のものを含む。以下同じ。)について,「社団法人情報通信技術委員會 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についての基本指針」に基づき,下記のとおり聲明書を提出します。

#### 記

1. 該当するTTC 標準またはTTC仕様書(以下あわせてTTC 標準等という。)の番號および名稱(原案を含む。)
2. 工業所有權等の出願人および權利所有者の氏名または名稱
3. TTC標準等の内容の全部または一部を實施するうえで,上記の權利所有者が所有する,必須の工業所有權等について,實施の權利を許諾するにあたっての條件

(注1) 必須の工業所有權等とは,當該TTC 標準等の内容の全部又は一部を日本國內において實施する際に當該工業所有權等を侵害することが技術的に回避できない,あるいは技術的には回避可能であってもそのための選擇肢は費用,性能等の観点から實質的には選擇できないことが明らかと,當該當利所有者が信じるものをいう。

(注2) 下記(1),(2)又は(3)のいずれか一つを選擇し,文頭の口をチェックすること。

- (1) 當該TTC 標準等を實施する者に寫し,當該TTC 標準等を實施する範圍において,無償で當該工業所有權等の實施を許諾する。
- (2) 當該TTC 標準等を實施する者に寫し,當該TTC 標準等を實施する範圍において,適切な條件の下に,非差別的に當該工業所有權等の實施を許諾する。

(注3) ただし,當該TTC標準等の内容の全部又は一部を實施する上で必須の工業所有權等を所有し當該TTC標準等を實施する他の者が,上記第2項の權利所有者が本項で選擇した條件とは對等でない條件を當該當利所有者に寫して主張した場合は,當該當利所有者は當該他の者を本項の(1)又は(2)の對象から除外することができる。

### 공업소유권 실시허락에 관한 성명서

사단법인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이사장 \_\_\_\_\_ 앞

제출연월일: 평성 년 월 일  
제 출 자: (회사, 소속, 성명, 인)

귀사의 표준화 안전에 관한 공업소유권등(공업소유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말하며, 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대하여 '사단법인 정보통신기술위원회 공업소유권등의 취급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1. 해당 TTC 표준 또는 TTC 사양서 (이하 'TTC 표준등'이라 한다)의 번호 및 명칭 (원안 포함)
2. 공업소유권등의 출원인 및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TTC 표준등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기 권리자가 소유하는 필수 공업소유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는 조건

(주1) 필수 공업소유권이란, 당해 TTC 표준등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공업소유권의 침해를 기술적으로 회피할 수 없거나, 기술적으로 회피 가능하더라도 이를 위한 선택으로 비용·성능 등에서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당해 권리자가 믿는 것을 말한다.

(주2) 다음 (1), (2) 또는 (3) 중 하나를 선택하고, 앞의  를 체크할 것

- (1) 해당 TTC 표준등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TTC 표준등을 실시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해당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
- (2) 해당 TTC 표준등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TTC 표준등을 실시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해당 공업소유권의 실시를 허락한다.

(주3) 다만, 해당 TTC 표준등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데에 필수적인 공업소유권등을 소유한 해당 TTC 표준등을 실시하는 기타의 자가 상기 제2항의 권리자가 본항에서 선택한 조건과 대등하지 않은 조건을 해당 권리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는 당해 기타의 자를 (1) 또는 (2)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上記の(1),(2)のいずれをも選擇しない。

#### 4. 對象となる工業所有權等

##### 4.1 上記第3項で(1)または(2)の條件を選擇した場合

對象となる工業所有權等は以下のとおりです°

(注4) 下表に記載がない場合, 上記第2項の權利所有者が所有する, 當該TTC標準等の内容の全部又は一部を實施するうえで必須の工業所有權等はすべて, 上記第3項で選擇した條件における實施許諾の對象として含まれるものと見なされる。

出願番號 (出願日)	公開番號	登録番號	發明等の名稱

##### 4.2 上記第3項で(3)の條件を選擇した場合

對象となる工業所有權等に係わる情報は以下のとおりです。

(注5) 任意の書式にて以下の3種類の情報を本?明書に添付して提供すること。  
 - 工業所有權等の出願番號(出願日), 公開番號, 登録番號, 發明等の名稱  
 - 影響を與えるTTC 標準等の部分  
 - 當該TTC 標準等に係る工業所有權等の請求の範圍

以上

(3) 上記の(1), (2) 모두 선택하지 않는다.

#### 4. 대상인 공업소유권

##### 4.1 상기 제3항에서 (1) 또는 (2)의 조건을 선택한 경우

대상 공업소유권 등은 아래와 같다.

(주 4) 아래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2항의 권리자가 소유하는 당해 TTC 표준등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데에 필수적인 공업소유권 등은 모두 상기 제3항에서 선택한 조건으로 실시허락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등록번호	발명등의 명칭

##### 4.2 상기 제3항으로 (3)의 조건을 선택한 경우

대상 공업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첨부로 한다.

(주 5) 임의 서식에서 이하 3종류의 정보를 본 성명서에 첨부하여 제공할 것  
 - 공업소유권등의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등의 명칭  
 - 영향을 줄 수 있는 TTC 표준등의 부분  
 - 당해 TTC 표준 등에 관한 공업소유권등의 청구 범위

## 社団法人情報通信技術委員会における著作権の取扱いについて

理事会  
平成 17年5月26日決定

### 1. TTC著作物の著作権

- (1) 社団法人情報通信技術委員会(以下、「TTC」という。)は、標準または仕様書及びその翻譯(以下、合わせて「TTC著作物」という。)を作成するために會員から提出された各種文章や表等の資料(以下、合せて「当該資料」という°尙、プログラムは會員からの特段の意思表示がない限り当該資料に含まれない。)の全部または一部を利用してTTC著作物を作成し、かかるTTC著作物を自ら利用すること及びTTC著作物の利用を第三者に許諾することについて、いかなる制限も受けないものとする。尙、利用とは複製、翻譯、翻案、公衆送信、そのほか著作権法に定める著作権が対象となる行爲をいう。
- (2) 會員は、TTC著作物の著作権者はTTCであると判断することに同意する。また、TTC著作物に利用された当該資料について、會員はその著作権を保持するものとするが、TTC著作物の利用について、TTC及びTTCが許諾した第三者に対して一切の権利主張(著作権者人格権も含む。)を行わないものとする。
- (3) 当該資料を提出した會員は、当該資料をTTCに提出することにより前2項の條件を承諾したものとする。

### 2. TTC著作物の利用

- (1) TTC著作物を利用しようとする者は、あらかじめTTCの許諾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引用等、著作権法が著作権者の許諾なく利用できることと定める行爲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はない。
- (2) TTC著作物を利用しようとする者は、あらかじめ次の事項を記載した利用申請書をTTC理事長宛に提出し、その利用の許諾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氏名
  - ② 住所
  - ③ 利用しようとするTTC著作物
  - ④ 利用目的
  - ⑤ 利用形態
- (3) TTC理事長は、前項の利用申請書を受け取ったときは速やかに審査し、その結果を回答するものとする。
- (4) TTC理事長は、利用の許諾をするときは以下の條件を付與するものとする。
  - ① TTC著作物の著作権はTTCが保有する旨を記載すること。
  - ② TTC著作物の利用に当たって第三者から著作権その他の知的財産権について権利主張を受けても、TTCは何ら責任を負わないこと。

## 정보통신기술위원회(TTC)의 저작권 취급

이사회  
2005년 5월 26일 결정

### 1. TTC 저작물의 저작권

- (1) 사단법인 정보통신기술위원회(이하, 'TTC'라 한다)는 표준 또는 사양서 및 기타 번역(이하, 'TTC 저작물'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문장과 도표 등의 자료(이하, '해당 자료'라고 한다. 프로그램은 회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TTC 저작물을 작성하고, 관련 TTC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 및 TTC 저작물의 이용을 제3자에게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용이란 복제, 번역, 번안, 공중 송신 기타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이 대상으로 되는 행위를 말한다.
- (2) 회원은 TTC 저작물의 저작자는 TTC에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또한 TTC 저작물에 이용된 해당 자료에 대하여 회원은 그 저작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TTC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TTC 및 TTC가 허락한 제3자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주장(저작권인격권도 포함)을 하지 않도록 한다.
- (3) 해당 자료를 제출한 회원은 해당 자료를 TTC에 제출하여 전 2항 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한다.

### 2. 저작물의 이용

- (1) TTC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TTC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인용 등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TTC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신청서를 TTC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이용 허락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① 성명
  - ② 주소
  - ③ 이용하려고 하는 TTC 저작물
  - ④ 이용목적
  - ⑤ 이용형태
- (3) TTC 이사장은 전항의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다.
- (4) TTC 이사장은 이용 허락을 한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 ① TTC 저작물의 저작권은 TTC가 보유한다는 뜻을 기재할 것
  - ② TTC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있더라도 TTC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

(5) TTC理事長は, TTC著作物の利用がTTC標準等の普及に貢献しかつ公益に資すると判断される場合には, 無償で利用を許諾することが出来る。

(5) TTC 이사장은 TTC 저작물 이용이 TTC 표준등의 보급에 공헌하고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허락할 수 있다.